

1. 의결주문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, 채무조정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아울러, 제출된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만으로 별도의 보완없이 불법추심자에 대한 경고, 전화번호 등 불법수단 차단, 수사의뢰 등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(안 제6조의5)

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 또는 전화·구술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 정보제공 그 밖에 객관적 자료로 불법대부 전화번호임이 소명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나.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개정 (안 별지 제2호서식)
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신고인 유형, 채권자 정보, 불법추심
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심의 요청

대통령령 제 호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5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				(앞 쪽)
접수번호		접수일시		
[1. 타 기관 연계여부]				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접수 여부	[] 예 (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명: , 담당자명:)			
경찰 연계접수 여부	[] 예 (담당 경찰서·청: , 담당자명:)			
지자체 복지센터 등 타 기관 연계접수 여부	[] 예 (기관명: , 담당자명:)			
[2. 기본사항(필수 기재)]				
구분	☐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 대출 피해 신고/제보 ☐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/제보 ☐ 기타 사금융피해상담			
신고인 유형	[] 피해자 [] 피해자의 관계인 [] 기타 ()			
※ 신고인 유형에 따라 아래 신고인 인적사항 작성				
① 불법사금융 피해자				
피해자 성명		피해자 생년월일		
피해자 주소				
피해자 전화번호		피해자 이메일		
사회복지대상 여부	[] 기초생활 수급자 [] 차상위계층 [] 한부모가족 [] 해당없음			
피해유형	☐ 법정 최고금리(연 20%) 초과 피해자 ☐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☐ 무등록대부업 피해자			
②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관계인				
→ 하단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다음, 곧바로 8번 신고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				
관계인 성명		관계인 생년월일		
관계인 주소				
관계인 전화번호		관계인 이메일		
채무자와의 관계	☐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☐ 채무자의 친족 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			
③ 기타: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관계인이 아닌 경우				
→ 하단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다음, 곧바로 8번 신고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				
신고인 성명		신고인 생년월일		
신고인 주소				
신고인 전화번호		신고인 이메일		

[3. 채권자]				(뒤 쪽)
성명(명칭) 또는 업체명				
사업자 등록번호				
채권자 유형	☐ 등록대부업자 ☐ 미등록대부업자(불법사금융업자) ☐ 모름			
불법대출을 알게된 경로	☐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(사이트주소:) ☐ SNS 등 인터넷 광고 (인터넷주소: 업체명: , 대표자성명: , 전화번호:) ☐ 대출 광고 문자 (문자 발신 전화번호: 수신일자: , 수신시각:) ☐ 전단지/명함 (수거일자: , 수거시각: , 수거장소:) ☐ 지인 소개			
사업장 주소				
연락처	☐ 전화 (전화번호:) ☐ 메신저 (메신저명: , 메신저ID:)			
[4. 대출내역]				
대출계약 존재 여부	☐ 있음 ☐ 없음			
대출계약 체결 수단	☐ 자필 차용증 등을 채권자에게 전달 ☐ 기타			
원래 계약조건 (계약 체결시)	☐ 주변 (만원 대여 일주일 후 만원 상환) ☐ 일수 (만원 대여 후 00일간 매일 만원씩 상환) ☐ 월변 (만원 대여 한 달 후 만원으로 상환) ☐ 기타 (자유롭게 서술,)			
실제 대출실행 및 상환내역				
대출시기(기간)		대출액(원)		
상환금액(원)		연 이자율(%)		
[5. 불법추심 피해내용]				
불법추심 피해여부	☐ 예 ☐ 아니오	불법추심자 성명		
불법추심자 연락처	☐ 전화 (전화번호: - -) ☐ 메신저 (메신저명: , 메신저ID:)			
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희망 여부	☐ 예 ☐ 아니오	메신저를 통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서 송달 희망 여부	☐ 예 ☐ 아니오	
피해유형	☐ 가족,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☐ 가족,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(나체사진) 게 시물 등을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(온라인게시물 주소:) ☐ 성착취 추심			

	☐ 폭력·폭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 (앞 쪽) ☐ 반복적 전화·문자·방문 ☐ 야간(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)에 추심 ☐ 기타
피해내용	

[6. 부수사건 관련 정보]

현재 채무조정 진행여부	☐ 개인파산/면책 ☐ 개인회생 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☐ 기타
향후 채무조정 및 채권자에 대한 법적조치 의향 유무	☐ 채무자 연락금지 ☐ 고금리 초과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☐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☐ 개인파산/면책 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법률 상담 ☐ 기타 법률 상담
채권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	☐ 예
수사의뢰 의향 여부	☐ 아니오

[7. 신고사항]

※ 피해자는 아래 신고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

혐의업체명	혐의업체 사업자등록번호
혐의업체 전화번호	혐의업체 주소
피해 내용	
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의향 유무: ☐ 예 ☐ 아니오	

[8. 입증자료]

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
(예) ①대부계약서 ②금융거래 확인서 ③불법추심피해 확인자료 ④기타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금융감독원장 귀하

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금융감독원장은 「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이 법의 위반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·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개인(신용)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]

수집 · 이용 항목	수집 · 이용 목적	보유 · 이용 기간
신고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피신고인 정보(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SNS계정), 대출내역,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,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	전화번호, SNS계정, 불법 인터넷게시글, 불법추심에 사용된 금융계좌 등 불법수단의 차단, 채무자대리인의 (관계인 지원 포함) 선임 의뢰, 피해자의 손해배상 ·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지원 및 대외기관 수사 · 조치의뢰를 위한 신고자의 신원확인, 불법행위를 한 등록 대부(중개)업자에 대한 조치 등	수집 · 동의일로부터 3년

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[개인(신용)정보 제3자 제공 내역]

제공받는 자	제공 목적	제공 항목	보유 · 이용 기간
채권자	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 통보,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통보 등	신고인의 성명, 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, 대출내역,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,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	제공후 3년
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 중 거래상대방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	금융거래의 확인,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및 해당계좌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등	신고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대출내역,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,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	제공후 3년
과학기술정보통신부	불법대부광고,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	신고인의 성명, 연락처, 피신고인 정보(전화번호), 입증자료 등	제공후 3년
주식회사 카카오, 라인플러스 등 SNS플랫폼 운영회사	불법대부광고,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SNS계정의 이용중지 및 게시물 차단 등	신고인의 성명, 연락처, 피신고인 정보(SNS계정), 입증자료 등	제공후 3년
방송통신심의위원회, 방송통신위원회	불법대부광고,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게시물 차단 등	신고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대출내역,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,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	제공후 3년
대한법률구조공단	법률상담 · 지원, 채무자대리인 선임, 관계인 지원, 손해배상 ·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기 등	신고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피신고인 정보(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SNS계정), 대출내역,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, 금융거래확인서, 채권추심행위 정보, 입증자료 등	제공후 3년
신고내용이 대부(중개)업체와 관련된 민원 또는 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	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소관 업무 처리 등	신고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피신고인 정보(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SNS계정), 대출내역,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, 금융거래확인서, 채권추심행위 정보, 입증자료 등	제공후 3년
관할 경찰서(청) 등 수사기관	신고내용 중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등 소관업무 처리 등	신고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피신고인 정보(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SNS계정), 대출내역,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, 채권추심행위 정보, 입증자료 등	제공후 3년
한국자산관리공사, 신용회복위원회,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	금융지원, 채무조정 등 소관 업무의 처리 등	신고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대출내역,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역,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	제공후 3년

위와 같은 개인(신용)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5(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 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“시· 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 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~ ⑦ (생 략)	제6조의5(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 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 <u>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56조에 따른 <u>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</u>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513